

[[공급망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서문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 함께 인권 존중, 안전한 근로 환경, 환경보호, 윤리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행동강령은 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RBA Code of Conduct 등을 참고하여 수립되었으며, 협력사 여러분께서는 본 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 및 노동

근로조건

협력사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이 법률 기준 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고, 사회보험과 복리후생 제도를 성실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별금지

채용, 평가, 승진, 보상 등 고용 전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양한 배경의 근로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담보노동, 인신매매 등 비자발적 노동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하며, 청소년 고용 시에도 법적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권 실사

협력사는 인권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안전 및 보건

근로환경

협력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정기적인 작업장 점검, 환기·조명·위생 설비 개선 등 기본 환경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상 대응

화재, 지진, 사고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 장비나 비상 탈출 경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상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3. 환경

환경법 준수

협력사는 모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폐기물, 폐수 처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활동이 요구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도입이나 탄소 절감 기술 적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윤리경영

부패방지

어떠한 형태의 뇌물, 금품, 향응 제공도 허용되지 않으며, 협력사는 투명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

협력사는 거래 과정에서 담합, 가격 합의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고객과 당사의 정보 및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마련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절차를 갖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5. 분쟁광물

정책 방향

우리 회사는 국제 사회의 분쟁광물 규제에 동참합니다. 협력사는 납품하는 제품에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국제 표준(RMI 등)을 참고하여 공급망 내 원산지 확인 및 자발적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실행과 지원

자체 점검

협력사가 스스로 ESG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간단한 체크리스트나 자가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 및 지원

우리 회사는 협력사에게 ESG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를 돕고, 필요시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공유합니다.

점진적 개선

협력사와 함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을 유도합니다. 개선 진행 상황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신고와 보호

신고 채널

협력사는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익명 신고 채널을 통해 보고할 수 있으며, 모든 제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보 절차와 결과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복 금지

선의로 신고한 근로자나 이해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협력사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성실히 실행해야 합니다.

부칙

본 강령은 법규보다 엄격한 경우 협력사에게 직접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규와 상충할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합니다. 본 강령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신 국제 기준을 반영합니다.